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체계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안 제23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기준 등을 개정된 법 체계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입법예고(2022. . .~2022. . .) 및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항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④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제1항제1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이상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u> <u>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u> <u>나.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제3호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의</u>	<u>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u> <u>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u> <u>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u> <u>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u> <u>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2. 배치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항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건축인 사람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④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제1항제1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

<u>소속된 사람(제2호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u> <u>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u> <u>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u>	<u>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u> <u>3.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이상</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9